

## (재)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수당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(이하 “재단“이라 한다) 직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직원의 수당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수당의 지급)** ① 재단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(연속유산)의 통합관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파견 또는 1개월 이상 합동근무 하는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[별표 1]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각 호의 수당 등에 대한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하되 그 외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4조(수당지급일)** 직원의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이전 일에 지급한다.

**제5조(시행내규)**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##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

구분	직급	금액(월)	비고
센터장	5급 이상	700,000	과견시
팀장 및 직원	5급 이하	600,000	과견시